

예 산 총 칙

2019년도 추경 2 회

제 1 조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606,074,122	18,182,224
일반회계		549,194,527	16,475,836
특별회계		56,879,595	1,706,388
공기업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48,705,335	1,461,160
	상수도공기업	22,678,000	680,340
	하수도공기업	26,027,335	780,820
	기타특별회계	8,174,260	245,228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104,238	3,127
	의료급여기금운영	1,075,179	32,255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558,980	16,769
	공영개발사업	399,516	11,985
	농공지구조성사업	2,422,977	72,689
	기반시설	18,733	562
	장기미집행	496,248	14,887
	수질개선	511,673	15,350
	주택사업	2,586,716	77,601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별첨 “채무부담행위조서”와 같다.

제 4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와 같다.

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같다.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5,902,706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공기업특별회계포함)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13,800,000 천원으로 한다.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